

‘사건 브로커’ 수사 마무리 수순 밟나...관급 납품 비리 주목

수사 무마·인사 청탁 금품 수수 검·경 관계자 20여명 조사 전·현직 경찰 8명 구속·기소...정치권 인사 연루 증언 촉각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상 인사청탁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사무마와 관련된 코인사기법 재판 과정에서 각종 지자체 관급비리 등이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

진호)는 지난 26일 성씨와 전직 A경감을 제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와 A경감(구속 기소)은 승진 청탁을 한 경찰들에게 금품을 수수해 전달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2021년 1월 당시 전남경찰청장인 B치안감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치안감은 재임(2020년 8월-2021년 12월) 당시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또 이날 목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정(구속·직위해제)과 경감(구속·직위해제)을 성씨를 통해

청탁을 하기 위해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씨 등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진도경찰서 소속 경감(직위해제)과 전남경찰서 소속 경감(직위해제)은 범행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무마와 인사비리 혐의로 총 20여명의 전·현직 검·경 관계자를 입건하고 8명을 구속해 모두 재판에 넘겼다. 또 승진청탁 관여자 일부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주경찰청장 C(59) 치안감(직위해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인정했다.

C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지난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사건브로커 성모(63·구속 기소)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B경감(당시 경위)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성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수사무마 의혹으로 현직 검·경 관계자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브로커와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혐의 입증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인사청탁, 수사무마에 대한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함에 따라 성씨와 연관된 지자체 납품 비리에 눈길이 쏠린다.

성씨와 연관된 코인 사기법의 재판에서 지자체 관급비리 의혹과 정치권 인사들도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자체 관급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성씨와 관련된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내역을 확보했지만 정식 수사 절차는 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로써 성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옹호 사미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종교 신념·교리 따라 자녀 학교 안보낸 부친 징역형

종교적 신념을 고집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자녀 B(당시 14세)씨가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종교 교리 공부를 하라고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교 진학을 앞둔 지난 2018년 7월 A씨는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갈등하던 중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체고 출생인 A씨는 한 종교를 신봉해 지난 2009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A씨는 B씨가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 전학을 하게 되자 검정고시를 치르라고 권유했고 B씨도 동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의무교육 과정과 무관한 종교 교리와 영어 공부만을 강요했고, 이에 B씨는 검정고시를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해 ‘학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달 가까이 B씨를 지키며 방에서 못나가게 했다. A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B씨는 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겨우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다.

2018년 B씨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B씨가 ‘자동차학과로 진학을하겠다’고 하자 “교리에 의하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쳐서 바다가 육지를 덮을 것이다. 해양과학고에 진학해 배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고 반대하며 B씨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가 없었다면 고등학교에 진학한 B씨가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친구집을 전전공공하다 결국 침터에서 생활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점, B씨와 동생들의 안위를 걱정해 피해사실을 밝힌 점, 미성년자의 유일한 보호자가 A씨 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서 불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신축 중인 아파트 16층에서 지난26일 오전 8시께 불이 났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전 9시께 진화됐다. <독자 제공>

사건 인사이트

외도 의심 아내 몸에 자신 이름 문신한 남편

감금 치상·상해 징역 5년 선고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몸에 자신의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겨넣은 열기행각을 벌인 남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중감금 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후 지난해 7월 6일 출소한 A씨는 이를 뒤인 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제로 B씨의 온몸에 자신의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겨 넣게 하고 주거지에 9시간여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집에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고, 뱀을 무서워하는 B씨에게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니가 뱀을 싫어하는 것보다

몇 만배 더 괴롭다”면서 유튜브 범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를 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인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 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고 문신업소에 B씨를 데려갔다.

강요에 못이긴 B씨는 결국 양쪽 손목, 다리 등 모두 5곳에 ‘A씨의 이름’, ‘혼인신고 날짜’,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다’ 등의 문신을 새겼다.

재판부는 “B씨는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겨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소 2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후 3일 된 딸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선고

생후 3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를 뒤 퇴원해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딸의 시신을 가방에 넣고 모텔에서 나와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산전 병원을 방문하거나 주변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아이 걸싸개만 구입하고 기저귀, 젖병 등의 기본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아이를 낳아 양육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점, 응급 처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 목 장

